

관악구 노상공영주차장 추첨식 정기주차 감면

※ 2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(중복할인 금지)

(기준: 2024. 7.)

할인적용	구분	관 악 구 조 례 (감면)	적용지침
100% (면제)	모범·유공 납세자	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정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.	모범(국제청) 유공(서울시) 모범납세자 유공표지 · 각각 표지의 유효기간 확인 ·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· 유효기간 만료 시 정상요금 적용
	임산부	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하고 「모자보건법」제23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 탑승한 경우 면제	표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 · 관악구 관내 거주자 ·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 · 유효기간 만료 시 정상요금 적용
80%	장애인	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할인한다.	주차가능 표지판 부착 장애인 탑승 복지카드 소지 ·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장애인등록증
80%	상이·국가 유공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할인한다.	· 주차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을 통한 주차요금 할인 ·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.18자유상이자만 해당 ·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판(국가유공자증) 소지자
80%	고엽제 환자	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주차요금의 80%를 할인한다.	· 참전 및 파병군인이 아닌 고엽제 후유증 환자 (본인에 한함)
50%	경형(차) 및 저공해차량	「자동차관리법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할 수 있다.	· 주차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을 통한 주차요금 할인 · 경차: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 · 저공해차: 전기차, 수소전기차, 하이브리드차 →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저공해차 확인 [1~3종 검증 차형]
50%	착한 임대인	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50% 감면	· 착한 임대인 인증서와 신분증 대조 확인 ·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
두 자녀 이상 50%	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	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할 수 있다.	· 신용카드: 카드 앞면 막내 생년월일 + 18(18세) 기간까지 할인 · 다둥이 행복카드: 뒷면 유효기간 확인 필수
30%	우수자원 봉사자	관악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.	· 우수자원봉사증 확인 ·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
30%	병역 명문가	「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할 수 있다.	· 병역명문가증과 주소지가 표기된 신분증 대조 후 할인 ※주소가 반드시 관악구를 의미하지 않음
50% 감면	5.18 민주 유공자	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.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	· 대상: 5.18 유공자증(부상자) 소지 및 운전하는 경우만 해당 시(사업자 제외) · 공로자 미해당